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5.3.1]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579호, 2025.2.28, 일부개정]

교무처(교무과) 880505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고등교육법」제1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겸임교원등(이하 "비전임교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비전임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겸임교원"이란「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에서 규정하는 겸임교원으로서 그 직무내용이 본교에서 담당할 교육 및 연구내용에 적합하여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의 강의 또는 공동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전일제로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초빙교원"이란「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에서 규정하는 초빙교원으로서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일제로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3. "강의교원"이란「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에서 규정하는 초빙교원으로서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의를 전담하기 위하여 전일제로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임교원"이란 국·내외적으로 학술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국가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서, 교육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전일제로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5. "임상교원"이란 임상 분야 전문가로서 임상과 관련된 교육, 실습, 진료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일제로 임용된 사람 또는 서울대학교 관련 법인 병원(위탁운영 병원 포함)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본교에 비전일제로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6. "산학협력중점교원"이란 강의 및 기술이전 등의 산학협력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전일제로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7. "객원교원"이란 국가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실무경험과 학문적 업적을 갖춘 사람으로서 교육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일제 또는 비전일제로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8. "외래교원"이란 임상 분야 전문가로서 교육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전일제로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9. "연구교원"이란 교내·외의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일제로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특수한 교과"란 대학(원),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또는 첨단융합학부에서 교과과정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교과목을 의미한다.<개정 2025.2.28.>

③ 이 규정에서 "소속기관"이란 대학(원),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첨단융합학부,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 학부대학 산하기구 등을 의미한다.<개정 2025.2.28.>

제3조(적용범위)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임용시기 및 임용기간 등) ① 비전임교원은 매월 1일자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비전임교원이 필요한 경우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의 참여를 위하여 비전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3.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외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③ 비전임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신규임용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신규임용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 3년을 초과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9.12.26.>

④ 비전임교원의 임용연령은 만 65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만 65세에 이른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한다.<개정 2025.2.2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만 65세를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5.2.28.>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비전임교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학(원) 주관 부속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경우에는 주관 대학(원)의 장이 추천한다.

② 비전임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③ 신규채용 및 재임용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 절차 및 구체적인 평가 기준·항목·비중·방법, 심사위원의 구성·위촉 등은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총장은 비전임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임용기간
2. 강의시간(강의를 담당할 경우)
3. 임금 및 그 지급방법
4. 복무 등 근무조건
5. 면직사유
6. 그 밖에 계약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임용계약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별지 서식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2.28.>

제6조(임용결격사유)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5.2.28.>

제7조(인사기록) 총장은 비전임교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이 때 총장은 「서울대학교 행정정보화 서비스지침」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9.08.13.>

제8조(구비서류) ① 비전임교원의 임용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용추천서
2. 활용계획서
3. 인사기록카드 또는 이력서(연구실적 등 포함)
4. 졸업·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단, 자격 요건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
5.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6. 원 소속기관장 및 본인 동의서(해당자에 한함)
7. 소속기관 또는 주관대학(원)의 인사(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8.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발급된 체류자격에 맞는 사증 사본(외국인에 한함)

9. 그 밖에 임용에 필요한 서류

② 임용 후보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제3호 중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08.13.>

③ 제1항제4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08.13.>

제9조(임용계약사항 및 복무) ① 비전임교원의 임용 계약사항은 교원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전일제 비전임교원의 출강·겸직 등 복무에 관한 제반 사항은 소속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당연퇴직) 비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사망한 경우(이 경우 사망한 다음 날에 퇴직된 것으로 본다)
2.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5.2.28.>

제11조(면직) 총장은 비전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제청에 의하여 비전임교원을 면직할 수 있다.

1. 임용계약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속기관이 폐지되는 경우 등 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참여 연구과제 및 사업 등이 종료되는 경우
4.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12조(신분증 및 편의제공) ① 비전임교원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 비전임교원에게는 교육·연구 및 관련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2장 겸임교원

제14조(소속과 구분) ① 겸임교원은 대학(원), 대학(원)의 학과(부),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또는 첨단융합학부에 소속된다. <개정 2025.2.28.>

② 겸임교원은 겸임교수, 겸임부교수, 겸임조교수로 구분하되, 직명별 최저소요경력은 교원인사규정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5조(자격) 겸임교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음
2. 국내·외 국가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적으로 종사하는 사람

제16조(임무 등) ① 겸임교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의 강의
2. 대학(원)생 연구지도
3. 본교 전임교원과 공동연구 등

② 겸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겸임교원의 근무는 원 소속기관과의 협의 및 별도로 정하는 임용계약에 의한다.
④ 겸임교원은 본교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제17조(처우 및 재원) 겸임교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초빙교원

제18조(소속과 구분) ① 초빙교원은 대학(원), 대학(원)의 학과(부),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또는 첨단융합학부에 소속된다. <개정 2025.2.28.>
② 초빙교원은 초빙교수, 초빙부교수, 초빙조교수로 구분하되, 직명별 최저소요경력은 교원인사규정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9조(자격) 초빙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다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강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0조(임무) ① 초빙교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 및 실습
2. 특별강의 및 세미나
3. 대학(원)생 연구지도
4. 본교 전임교원과 공동연구
5.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연구

② 초빙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1조(처우 및 재원) 초빙교원의 처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재원은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한다.
1.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것
2.「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가 될 것
3.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될 것

제4장 강의교원

제22조(소속 및 구분) ① 강의교원은 학부대학 산하기구에 소속된다. <개정 2025.2.28.>
② 강의교원은 강의교수, 강의부교수, 강의조교수로 구분하되, 직명별 최저소요경력은 교원인사규정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3조(자격) 강의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다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강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4조(임무) ① 강의교원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12시간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강의를 담당하고, 강좌 개발 및 학사관련 업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9.12.26.>

② 제1항의 강좌개발 및 학사관련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전임교원의 직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처우 및 재원) 강의교원의 처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재원은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한다.

1.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것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가 될 것
3.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될 것

제5장 특임교원

제26조(소속 및 구분) ① 특임교원은 대학(원), 대학(원)의 학과(부),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또는 첨단융합학부에 소속된다. <개정 2025.2.28.>

② 특임교원은 특임교수, 특임부교수, 특임조교수로 구분하되, 직명별 최저소요경력은 교원인사규정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7조(자격) 특임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다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강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외국인이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 및 연구기관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제28조(임무) ① 특임교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 및 실습
2. 특별강의 및 세미나
3. 대학(원)생 연구지도
4. 본교 전임교원과 공동연구
5.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연구

② 특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9조(처우 및 재원) 특임교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임상교원

제30조(소속과 구분) ① 임상교원은 대학(원)의 학과(부)에 소속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속시설에 소속될 수 있다.

② 임상교원은 임상교수, 임상부교수, 임상조교수로 구분하되, 직명별 최저소요경력은 교원인사규정 제14조를 준용한다.

제31조(자격) 임상교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임상 분야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강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음

2. 임상 분야 전문가 면허(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영양사, 나무의사 등)를 소지한 사람

제32조(임무) ① 임상교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 및 임상실습
2. 실무교육
3. 대학(원)생 연구지도
4. 임상 관련 연구
5. 임상진료 또는 임상약료
6. 기타 임상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임무

② 임상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3조(처우 및 재원) ① 전일제 임상교원은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하되, 재원은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한다.

② 비전일제 임상교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산학협력중점교원

제34조(소속)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대학(원), 대학(원)의 학과(부),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첨단융합학부, 연구시설 또는 산학협력단에 소속된다. <개정 2025.2.28.>

제35조(자격)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강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음
2.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제36조(임무)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 및 연구활동
2.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른 인력 양성
3.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4.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②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7조(처우 및 재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은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하되, 재원은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한다.

제8장 객원교원

제38조(소속과 구분) ① 객원교원은 대학(원), 대학(원)의 학과(부),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첨단융합학부 또는 학부대학 산하기구에 소속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속시설 또는 총장이 승인하는 기관에 소속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② 객원교원은 객원교수, 객원부교수, 객원조교수로 구분하되, 직명별 최저소요경력은 교원인사규정 제14조를 준용한다.

제39조(자격) 객원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다만,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강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0조(임무) ① 객원교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 및 실습
2. 특별강의 및 세미나
3. 대학(원)생 연구지도
4. 본교 전임교원과 공동연구
5. 학생 전공 및 진로 설계 지도<개정 2025.2.28.>

② 객원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1조(처우 및 재원) ① 전일제 객원교원은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하되, 재원은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한다.

② 비전일제 객원교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외래교원

제42조(소속) 외래교원은 대학(원)의 학과(부)에 소속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속시설에 소속될 수 있다.

제43조(자격) 외래교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임상 분야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강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음
2. 임상 분야 전문가 면허(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영양사, 나무의사 등)를 소지한 사람

제44조(임무) ① 외래교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 및 실습
2. 대학(원)생 연구지도 등

② 외래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5조(처우 및 재원) 외래교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연구교원

제46조(소속과 구분) ① 연구교원은 연구시설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소속된다.

② 연구교원은 연구교수, 연구부교수, 연구조교수로 구분하되, 직명별 최저소요경력은 교원인사규정 제14조를 준용한다.

제47조(자격) 연구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다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8조(임무) ① 연구교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장이 지정하는 연구과제 수행
2. 본교 전임교원과 공동연구
3. 연구와 관련된 강의 및 실습
4.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임무

② 연구교원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제3호의 임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③ 연구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3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12.26.>

제49조(처우 및 재원) 연구시설 소속의 연구교원에게는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보수를 소속기관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연구시설 이외의 기관 소속 연구교원에게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재원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BK교원) 두뇌한국21사업에 의거 소속 사업단 내에서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기 위하여 각 사업단의 선발에 의하여 임용된 BK교원은 해당 사업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장 보칙

제51조(각 기관 세부지침) 비전임교원의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세부지침은 소속기관의 인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대학(원) 주관 부속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비전임교원의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고자 할 경우 주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2579호,2025.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는 비전임교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전임교원 임용 특례) 종전의 기초교육원, 자유전공학부 및 전공설계지원센터 소속 비전임교원은 학부대학이 설립된 때에 학부대학,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또는 학부대학 산하기구 소속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되, 임용기간은 종전의 계약에 따른다.